

금융회사가 알아야 할,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분야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4. 5. 1.부터 2024. 6. 10.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3. 3.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후속조치로, (i)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른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기준, (ii)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iii) 정보 전송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신용정보법상의 금융마이데이터와 비교하여 확인하고 금융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른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기준 규정(영 제 42조의2, 제42조의4)

정보주체 본인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본인 전송)와 제3자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제3자 전송)으로 구분하여,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기준을 마련 하였습니다.

① **본인 전송(다운로드)**의 경우: **정보전송자 기준**은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 수가 일일평균 10만 명 이상인 대기업·중견기업,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기관·법인·단체,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 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전송정보**는 법에 따라 전송 가능한 정보 중 제3자 권리 침해 정보 등 제외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외기준(시행령 개정안 제42조의4 제1항)

-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된 정보
- 시간·비용·기술 등 고려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전송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보
- 정보전송자가 시스템 내부 관리 목적으로 보유하는 등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와 관련성이 없는 정보 등

Related Areas

기업법무 및 금융

금융규제

e-비즈니스 & 핀테크

Contact

김시목 변호사

02-528-5764

smkim@yulchon.com

정세진 변호사

02-528-5777

sjjung@yulchon.com

이나영 변호사

02-528-5997

nylee@yulchon.com

박소영 변호사

02-528-5583

soyoungpark@yulchon.com

- ② 제3자 전송의 경우: 산업별 특성,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보전송자를 설정하고 전송정보를 보건의료·통신·유통 등 부문별로 유형화**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 기준은 하위 고시 제정을 거쳐 수립할 예정입니다.

정보전송자(시행령 개정안 제42조의2 제2항)

- 「의료법」 제3조의4의 상급종합병원 및 고시하는 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중 고시하는 자
-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중 연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또는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인 자 중 고시하는 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중 연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또는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인 자 중 고시하는 자

전송정보(시행령 개정안 제42조의4 제2항)

- 진단내역, 조제 내용 등 보건의료정보로서 고시하는 정보
- 기간통신서비스 가입정보 등 기간통신역무 정보로서 고시하는 정보
- 주문정보, 구매정보 등 상품·서비스를 거래하거나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처리하는 정보로서 고시하는 정보
- 부가통신역무에 관한 정보로서 고시하는 정보

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수신자로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분류 (영 제42조의8)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전송 중계 시스템 운영 및 기능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계 전문기관,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관리·분석하여 정보주체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전문기관, 민감한 보건의료정보를 관리·분석하는 특수 전문기관으로 구분됩니다.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기준 구체화 (영 제42조의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은 기술수준 및 전문성,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 재정능력 등의 요건을 심사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합니다.

<지정요건별 세부기준>

지정요건	세부기준
기술수준 및 전문성	①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② 개인정보 관리계획의 적정성 ③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적정성

지정요건	세부기준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	① 안전조치의무(법 제29조) 이행 ② 안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보호체계의 적정성
재정능력	①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안전성 ② 자본금(중계 전문기관 10억원, 일반 특수 전문기관 1억원) ③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 절차 구체화 (영 제42조의10)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예비지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침해사고 발생, 조건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전송 방법 및 절차 등 규정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효과적으로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방법, 정보전송자의 전송 방법 및 절차, 전송 요구 거절 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전송 요구 방법 등 구체화 (영 제42조의5)

정보주체는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대상 정보, 수신자 등을 특정하여 전송을 요구하여야 하며, 정보수신자를 통하여 전송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내역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기적 전송 요구도 가능합니다.

○ 전송 방법 및 절차 구체화 (영 제42조의6)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거절 또는 중단 사유가 없는 한, 중계 전문기관을 통해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한편, 정보수신자는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송받은 정보와 기존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전송요구권 제도 정착을 위한 기타 개정사항

그 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① 일반수신자 기준에 관한 규정(영 제42조의3), ② 정보전송자, 일반수신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리·감독 사항(영 제42조의12), ③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영 제42조의13), ④ 정보전송 수수료 산정 근거(영 제47조), 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업무의 위탁(영 제62조 제3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신용정보법상의 정보전송요구권 및 금융마이데이터와의 비교

신용정보법상의 정보전송요구권(제33조의2) 및 금융마이데이터(제22조의9)와 시행령 개정안 내용과의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수령자의 유형에 따라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의 범위가 구별되는 점

신용정보법은 정보전송요구권의 행사 범위에 관하여 정보전송자·전송되는 정보의 범위·정보를 전송받는 자를 규정하되, 정보를 전송받는 자의 유형에 따라 그 범위를 달리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달리,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를 전송받는 자의 유형을 본인 전송과 제3자 전송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의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 전문기관의 유형에 따라 수행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가 다른 점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마이데이터업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금융마이데이터업에 속하는 모든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중계 전문기관·일반 전문기관·특수 전문기관으로 구분하여 수행 가능한 서비스 및 지정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마이데이터업의 범위를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유형을 정하고 이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보 전송 방법의 차이점

정보 전송 방법과 관련하여, 신용정보법은 원칙적으로 정보전송자가 금융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직접 정보를 전송하도록 규정하여 API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전송자가 중계 전문기관을 통하여 정보를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효율적·안정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일을 2025. 3. 13.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정보를 전송 내지 수신하는 금융회사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고시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금융마이데이터와의 차이점이 많다는 점에서,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 예정인 금융회사는 시행령 개정안 및 관련 하위 규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용정보법상 금융마이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마이데이터를 함께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는, 각 법령에 따른 인허가 요건, 업무 수행 방법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사전에 이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의 **금융규제팀**은 금융마이데이터와 관련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득 등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데이터 플랫폼 구축, 금융통합앱 서비스 구축·운영 등 개인(신용)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